

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차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7.

발 의 자 : 차지호 · 박지원 · 신정훈
박희승 · 이해식 · 김준환
황명선 · 조정식 · 윤종균
김현정 · 김영진 · 박해철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재외공관은 대한민국 외교의 최전선에서 주재국과의 정치·경제·문화 교류 및 재외국민 보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, 주재국 내에 설치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개별 공관장의 재량이나 임시적 협약에 의존해오고 있음. 이로 인해 사업 간 중복 추진, 정보 단절, 성과관리의 미흡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특히 공공외교 사업의 다원화 및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공공외교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, 주재국 맞춤형 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따라,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, 사업정보 공유, 공동사업 추진,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·운영,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를 규정하여 공공외교의 연계

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체계를 정례적으로 구축·운영하도록 하며,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은 공공외교 관련 사업계획, 성과, 주재국 동향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의2).
- 나. 문화·예술·교육·체육, 경제·과학기술·환경,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기획·추진 근거 마련(안 제8조의3)
- 다. 외교부장관의 재외공관·공공기관·재외동포청 간의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·운영 의무화(안 제8조의4)
- 라. 공공외교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도록 의무화(안 제8조의5)

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외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 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공공외교 증진을 위한 정례적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외국에 지사·법인·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활동하는 해외활동 한국기관
3. 재외동포청 및 그 소속 기관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④ 제3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재외공관과 제3항 각 호의 기관은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, 외교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⑦ 외교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 및 정보 공

유의 이행 여부와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·평가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공공외교 사업의 공동 추진) ① 재외공관의 장은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외교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·추진할 수 있다.

② 공동사업 추진 시 참여 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상호 협하여야 하며, 역할 분담·예산 분담 및 성과관리·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4(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)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의 효율적인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위하여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.

1. 공공외교 사업의 계획·추진 현황 및 성과
2. 주재국별 공공외교 환경 분석 자료
3. 우수사례 및 정책제안 사항
4. 그 밖에 공공외교 증진에 필요한 정보

③ 외교부장관은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 및 국가안보·외교비밀 보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완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운영·관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다.

제8조의5(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)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협력 및 공동사업이 「공공외교법」,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, 「문화기본법」 및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보공유 시스템 준비) 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의4에 따른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준비를 할 수 있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체결된 협력협정이나 양해각서는 이 법에 따른 협력체계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의2(재외공관의 역할) ① ·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의2(재외공관의 역할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 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공공외교 증진을 위한 정례적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.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외국에 지사·법인·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활동하는 해외진출 한국기관 3. 재외동포청 및 그 소속 기관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<p>④ <u>제3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⑤ <u>재외공관과 제3항 각 호의 기관은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 공유하여</u></p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, 외교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⑦ 외교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 및 정보 공유의 이행 여부와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·평가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의3(공공외교 사업의 공동 추진) ① 재외공관의 장은 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외교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·추진할 수 있다.

② 공동사업 추진 시 참여 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, 역할 분담·예산 분담 및 성과관리·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의4(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)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의 효율적인

협력 및 정보 공유를 위하여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.

1. 공공외교 사업의 계획·추진 현황 및 성과

2. 주재국별 공공외교 환경 분석 자료

3. 우수사례 및 정책제안 사항

4. 그 밖에 공공외교 증진에 필요한 정보

③ 외교부장관은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 및 국가안보·외교비밀 보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완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운영·관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8조의5(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)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협력 및 공동사업이 「공공외교법」,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, 「문화기본법」

및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등
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중장기
계획과 연계되도록 필요한 조치
를 하여야 한다.